

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65,406,511	13,962,195
일반회계	459,576,095	13,787,283
특별회계	5,830,416	174,912
기타특별회계	5,830,416	174,912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052,499	91,575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407,302	12,219
주택사업특별회계	40,048	1,201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38,855	31,166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00,000	6,00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091,712	32,751

제 2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360,07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